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4114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정양현, 정지윤, 박주원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선영신

변론 종결 2020. 7. 23.

판결 선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이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4149호로 공탁한 300,017,03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1) C는 2015. 1. 6. D으로부터 인천 E 외 3필지 지상 F건물 3층 56세대 중 6세대(G호, H호, I호, J호, K호, L호)를 제외한 나머지 5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5. 2. 5.부터 2015. 4. 24.까지 D에게 잔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830만원을 지급하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7세대에 관하여 C가 지정하는 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D은 2015. 4.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50세대 중 1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3세대'라 한다)를 M, N에게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

C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D에 대한 채무불이행(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금액 9억 3,030만원 및 지연이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6. 1. D에게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6. 6. 2. D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C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함

1) 피고는 2016. 6. 13. D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C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된 13세대의 각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7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4441,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2) 한편 관련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2.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관련 사건 제1심법원 판결

피고는 위 다. 2)항의 채권양도계약 후에도 관련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고, 관련 사건 제1심법원은 2017. 4. 11. 손익상계를 일부 인정하여 'D은 피고에게 2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하여, 2018.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C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

C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아래에서 '양도인'은 C, '양수인'은 원고이다).

1. 양도하는 채권

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 1,300,000,000원(십삼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양도인이 채무자 D 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양도인은 위 채무자 D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금 1,300,000,000원(십삼억원), 이자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위 채권의 양도 기준일은 2016. 9. 22.이며, 위 기준일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채권 일체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한 권리를 부여한다.

바. 피고의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 경과

1) 피고는 관련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6. 12. D 소유인 인천 중구 ○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방법원 P)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금 수령권한을 이 사건 소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우에 위임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19. 4. 18. 피고가 300,962,24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돈 중 2019. 4. 18. 962,240원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위 배당표 작성 전인 2019. 4. 15.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1011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를 이유로 2019. 4.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300,017,034원을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4149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와 피고가 관련 사건 승소 시 받게 될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는 위 계약 당시부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배당금 962,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공탁된 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을 배당금수령인으로 위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관련 사건 판결금 또는 배당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사건 판결 확정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전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원고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배당금 962,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공탁된 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이행불능이란 물리적·자연적 불능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생활의 일반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회통념상의 이행불능이란 사회통념상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채무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 D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C에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에게 위 확정판결 내용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위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는 이행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양도채무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 채권액 상당인 13억 원의 전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8. 1. 15.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사실이 없고, 201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자력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C가 피고에 대하여 아래 3)항 기재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대위채권 피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관련 사건 판결과 관련된 배당금 및 공탁금은 종국적으로 C가 갖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C에 대한 배당금 및 공탁금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관련된 배당금의 지급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 962,2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수령일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아직 수령하지 못한 공탁금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위 양도사실을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이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기선

판사김주식

판사성재준